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7 - 752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1.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2017.09.08. ~ 2017.10.08. (30일간) 종로구청 3층 주택과(2148-2612), 부암동 주민센터(2148-5095) 및 신영동 221-1, 1층(마음톡방)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공고 기간 내에 종로구청 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30일 간

2. 공람장소

가. 종로구청 주택과(02-2148-2612)

나. 부암동 주민센터(02-2148-5095)

다. 신영동 마음톡방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구역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증) 49,391	49,391	-	-

나. 정비계획 수립(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391	-	49,391	100.0	-
주택용지(개별건축)		40,630	감) 141	40,489	82.0	-
정비기 반 시설 등	소계	8,761	증) 141	8,902	18.0	-
	도로	8,721	증) 24	8,745	17.7	-
	공원	-	증) 117	117	0.2	-
	사적지	40	-	40	0.1	-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49,391	-	49,391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3,258	-	43,258	87.6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133	-	6,133	12.4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구기동 139 일원	2,037,507 (41,260)	-	-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이하	480,290 (8,131)	서울시고시 제112호 (1993.4.26.)	변경고시 서고 제2014-110호 (2014.3.27.)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	82	335	-	-	-	-	-	-	1	82	335
소로	1	82	335	-	-	-	-	-	-	1	82	335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4	국지 도로	82	신영동 214-41도	신영동 231대	일반 도로	-	-	-

4. 주민공동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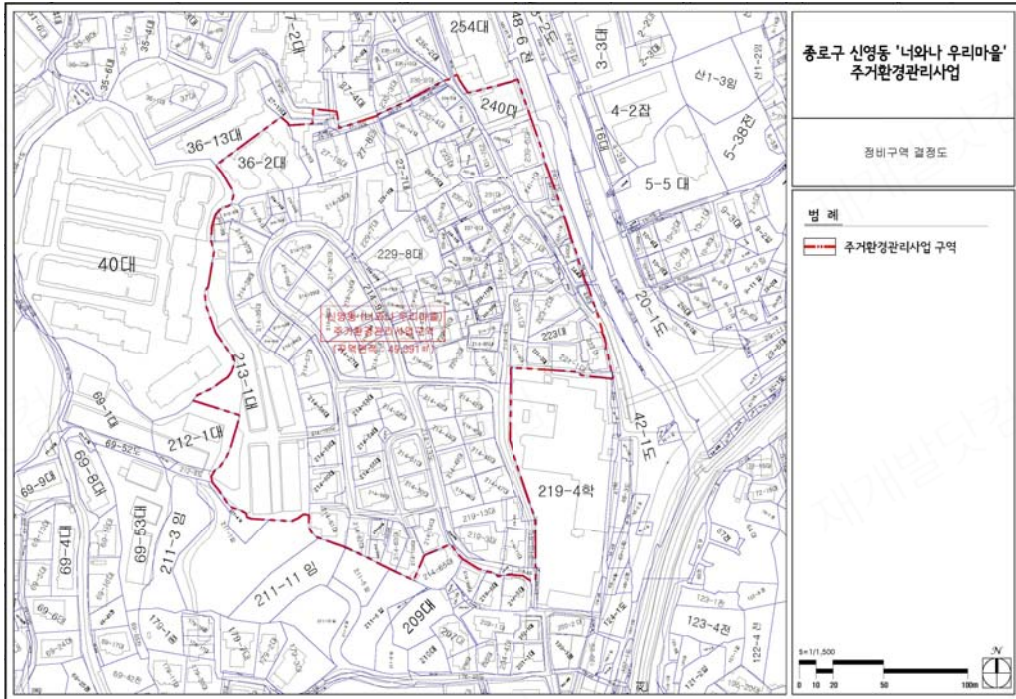
- 서울시 공동이용시설 매입자문회의 결과 매입추진이 결정되었으며, 매입절차 이행 중
- 설치계획 (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공공부문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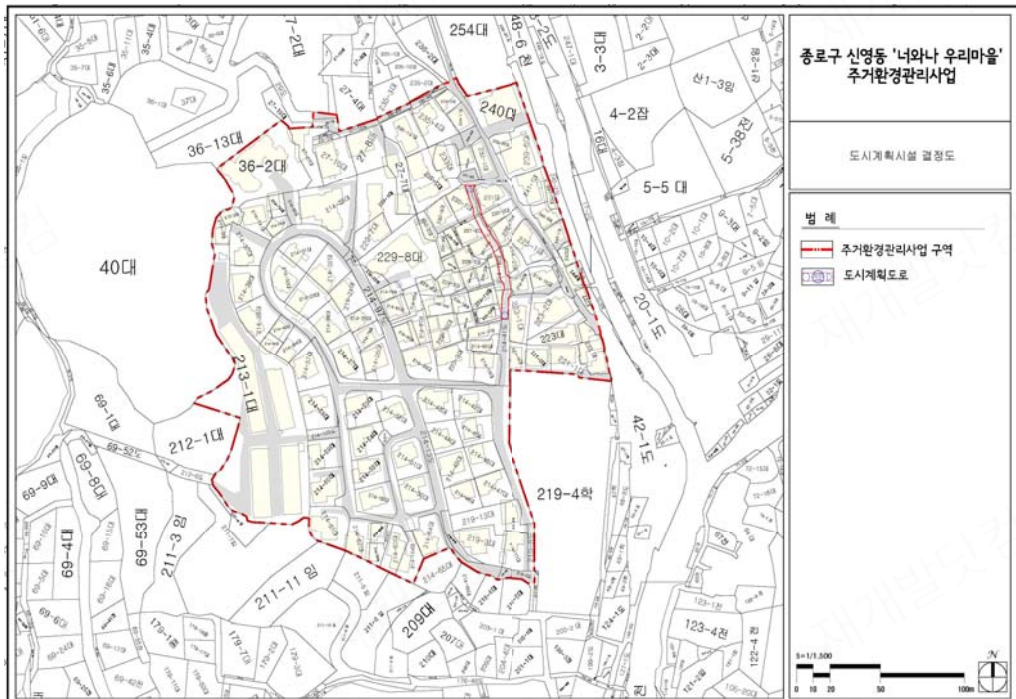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민간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주민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 및 활동 •열린운영회 구성으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마을축제,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 및 운영
	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우리마을지원사업, 한양도성공모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 마을탐방, 장구 및 뜨개질 문화교실, 소식지제작참여 등
공공	행정지원	•마을운영 및 계획자문에 필요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민원해결 및 지속적인 공동체활동을 위한 연계사업 정보제공
	사업계획	•안전한 마을만들기 : 범죄예방환경설계, 보행안전확보, 안전시설물의 개선 •생활이 편리한 마을만들기 : 가로경관개선, 편의시설 확충, 노후불량 개량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네트워크 연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6. 기타 관계도서 : 생략(관계도서 및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끝.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결정(안)도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도 >



공 란 의 건 서

사 업 명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공람기간	공람 · 공고일부터 30일간			
대 상 물 건 지	건 물			
	토 지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내 용

2017.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17.12.31.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17. 12. 31.에서 ’ 22. 12. 31.로 연장
- 나.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 회계법에 따로 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
- 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 하도록 규정. 또한 구성 위원 중 “재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상위법에 맞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금의 적립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전화: 02-2148-2326, FAX: 02-2148-5824, 담당: 김보현, E-mail: slpbear@mail.jongn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17.12.31.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근거규정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 기한을 ‘17. 12. 31.에서 ’ 22. 12. 31.로 연장
- 나.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에 따로 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
- 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또한 구성 위원 중 “재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상위법에 맞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라.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금의 적립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2017. 9. 8. ~ 9.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 종로구청장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때” 를 “ 경우” 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53조의2” 를 “지방회계법 제18조” 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예산·일자리·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양성평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0조를 “2017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기금은 규칙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를 “제31조에 따라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범위 안에서 사용·지원하며 “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수립 하여야 한다” 를 “수립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기관 운용관” 을 “기관운용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u>종로구청장</u> (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종로구청장----- -----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생 략) ② 주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u>구청장</u> 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생 략)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 「지방회계법」 제1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복지증진) ①(생 략)	제14조(복지증진) 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구청장은 <u>관계법령</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①(생략)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생략)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u>재정분야</u>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제29조(제작·가피·회피) ①~②(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u>해촉</u>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관계 법령----- 제26조(수당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운영에 -----.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3. 양성 평등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9조(제작·가피·회피) ①~②(현행과 같음) ③ ----- 해촉될 -----.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현행	개정안
제3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략) ③ <u>기금은 규칙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3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1조에 따라 기금은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지원하며,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u>수립 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제3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수립하여 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u> ② ~ ③ (생략)	제34조(회계공무원) ① ----- 기금운 용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금심의회 구성요건 규정변경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 2항)
-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 구성에 대한 위촉직위원선임 규정변경 및 삭제
 - 심의회 의원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

-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로 변경(안 제8조 3항)
-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8조 3항 3호)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모호한 용어정리

-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과 관련하여 “기금운영관 및 출납원”을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안 제6조1항)
-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과 관련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안 제6조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2017. 9.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도로과, 전화 02-2148-3182, 팩스 02-2148-5935, 담당 최성욱 E-mail : sbluesky@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 도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금심의회 구성요건 규정변경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모호한 용어정리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 2항)
-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회 구성에 대한 위원선임 규정변경 및 삭제
 - 심의회 의원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로 변경(안 제8조 3항)

-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8조 3항 3호)

다. 모호한 용어 정리

-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과 관련하여 “기금운영관 및 출납원”을 “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안 제6조1항)
-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과 관련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변경(안 제6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1항 중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 2항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 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 3항 3호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2년 12월 31일----- ----- ----- -----.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u>기금운용관 및 출납원</u> 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u>기금출납공무원</u> 은 굴착관리 업무 담당팀 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 ----- <u>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u> -----. ② -----, <u>기금출납원</u> ----- -----.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생략) 2. (생략) 3. <u>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u>	제8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④ (생략) ⑤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7-76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16. 4. 26.)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2017. 1. 5.)됨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 나. 상위법·서울시 조례 등과 비교·검토하여 종로구 실정에 맞게 재정비
-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알맞게 용어 순화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나.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 소유 가능함”을 명시
-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는 규정의 조항 변경
-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

마. “공인 등록기관” 명칭 통일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알맞게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민원여권과 (담당 이진경)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1906, 팩스 (02)2148-5916

다. 전자우편 : jilkangs73@mail.jongno.go.kr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16. 4. 26.)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2017. 1. 5.)됨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 나. 상위법·서울시 조례 등과 비교·검토하여 종로구 실정에 맞게 재정비
-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알맞게 용어 순화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17조)
- 나.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 소유 가능성”을 명시 (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는 규정의 조항 변경(안 제2조제3항, 신설)
-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1항~제4항, 신설)
- 마. “공인 등록기관” 명칭 통일 (안 제10조제1항)
-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알맞게 용어 순화(안 제3조제4항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 관인의 관리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9. 8. ~ 9. 28.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민원담당주사가”를 “마을행정팀장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8조의2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하는 때에는”을 “폐기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교부기관”을 “공인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폐기하는 때에는”을 “폐기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최초사용년월일”과 “폐기년월일”을 각각 “최초 사용 연월일”과 “폐기 연월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하는 때에는” 을 “사용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 -----.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 략) ②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u> ③ <u>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u>
제2조의2(특수공인)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처리과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공인의 관리) ①~③ (생 략) ④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u>행정민원담당주사가</u> 관	제3조(공인의 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마을행정팀장이</u>

현행	개정안
리한다.	-----.
제6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① (생략)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① (생략) ② ----- ----- ----- ----- ----- -----.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과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은 공인등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전자이미지공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각각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홍보전산과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u>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u> ② <u>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홍보전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신설>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재등록신청과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과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요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① ----- -----<u>필요가 있을 때에는</u> ----- ----- -----. ② ----- -----<u>폐기하고자 할 때에는</u> ----- ----- ----- ----- ----- ----- -----. ③ ----- ----- <u>폐기할 때에는</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교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 <u>공인</u> <u>등록기관</u>-----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u>폐기하는 때에는</u>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u>최초사용년월일</u> 또는 폐기 공인의 <u>폐기년월일</u> 3. ~ 4. (생략)	제11조(공고) ----- <u>폐기할 때에는</u> ----- ----- ----- 1. (현행과 같음) 2. ----- <u>최초 사용 연월일</u> ----- <u>폐기 연월일</u>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u>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u> <u>당해</u>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u>사용하는 때에는</u>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 ----- ----- <u>사용하고자 할 때에는</u> <u>해당</u> ----- ----- ----- <u>인정될 때에는</u> - - - - - ----- ----- ② ----- ----- <u>사용할 때에는</u> <u>-----</u> ----- -----
제17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	제17조(준용규정)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현행	개정안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② ----- --- 따라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6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4조의)
- 다. 그 밖의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374, 팩스 02-2148-5825

다. 전자우편 : iris223@mail.jongno.go.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의3)
-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4조3항)
- 다. 그 밖의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7.(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2회 이하로” 를 “두 차례”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하고,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6조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 를 “사람” 으로 , “때” 를 “경우”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타 구청장” 을 “구청장은 그 밖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u>2022년 12월 31일</u> -----.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u>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u> 구청장이 위촉하되, <u>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u>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u>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u>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 이하로</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③ ----- <u>두 차례</u> ----- -----. -----.
제4조3항(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4조3항(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 <u>재무관</u> ----- ----- ----- --- .
제6조(대여제한대상)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의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대여제한대상) 1. ----- 사람 2. (현행과 같음) 3. ----- <u>사람</u>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u>사람</u>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복학하지 아니하는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 대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 ② (생략)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1. -----
----- 경우
2. ----- 사람이 -----
3. ----- 사
탈. -----.
4. ----- 경우

제11조(채권보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그 밖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6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 나.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맞게 조례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394, 팩스 02-2148-5825

다. 전자우편 : 20121102145@mail.jongno.go.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4조 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 “를 ”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4 중 “해촉 될”을 “해촉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을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 ----- ----- ----- --.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 -.
제5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제5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생략) ② ----- ----- ----- -----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②(생략)	③-----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③ ----- -----

우에는 해축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원재활용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②(생략)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해축될----

제6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담당팀장----

제6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②(현행과 같음)

③「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68호

2017 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에 따라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성곽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지원 목적 :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성곽 경관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활성화
2. 신청 기간 : 2017. 9. 8.(금) ~ 9. 22. (금)
3. 지원 대상 :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부암권, 행촌권, 이화·충신권, 명륜·혜화권역)
4. 신청 자격 :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세입자는 소유주 동의서 제출)
5. 지원 범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10동 이내 지원 예정)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공사업형		공사내용	지원조건	지원금	
				기준	최대 한도
지붕 포함 집수리	경사지붕	경사지붕, 벽체, 창호, 담장 등 개선	- 사멘트기와 등 우수 재료 사용 - 건축지침 준수 등	공사비의 50%	1,200만원/동
	마을 특성화	마을별 결정고시 내용에 따름	- 건축지침 준수 등		
	평지붕	옥상방수, 벽체, 창호, 담장, 옹벽 등 개선	- 건축지침 준수 등		600만원/동
지붕 외 집수리		벽체, 창호, 담장, 옹벽 등 개선	- 건축지침 준수 등		

※ 내부 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로 사용

※ 자세한 지원범위는 마을별 정비계획 결정고시 참조

6. 지원 조건 (※ 반드시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원)

- 성곽경관 보전, 각 권역별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 상담창구 전문가 승인 (3회 : 선정전 현장조사, 공사 과정, 준공검사)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액 결정 및 최종 준공 승인
- 집수리 종료 후 보조금 지급(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전 승인된 공사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또는 감액)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억제), 주민 협정안 동의
 -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체결, 기간만료 전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협약
- 공사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선정

7. 선정방법 : 사전심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 공사계획서 및 도면 등으로 사전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사전심사 : 신청서 접수 후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계획서 및 도면 등 확인
- 선정위원회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실거주자 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거주기간, 건축연도 등)를 적용하여 선정

8. 사업기간 : ' 17. 9월 ~ ' 17. 11월

9. 지원 절차

-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소유자 동의서 제출)는 공사업체 후보를 선정하여 견적을 받은 후 구청에 공사계획서, 도면, 견적서, 주택개량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
- 이후 최종 지원대상자는 최종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사업계획서, 도면, 견적서 등을 구청에 제출
- 공사종료 이후 소유주는 구청에 준공신고를 하고 구청은 계획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축물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

대상자 모집	사전 심사	대상자 선정	착수신고	공사시행	완료정산
공사 계획 및 도면 제출 (지원대상자)	⇨ 전문가 승인 (구)	⇨ 대상자선정, 보조금선정 (서울시)	⇨ 서류 제출 (지원대상자) (구⇒소유주)	⇨ 중간점검 계획변경시 심의 신청 (지원대상자)	⇨ 정산서류제출 (지원대상자) 100%지급 (구⇒소유주)

※ 공사 계획 및 도면상 변동사항 있을시 반드시 전문가 심의 신청

10.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종로구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서울시에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 및 종로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 가. 지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11. 신청서류

- 성곽마을 주택개량 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서약서
- 집수리 공사 계획서
- 집수리 공사 입면도
- (세입자 신청시) 성곽마을 주택개량 건물주 동의서

12. 기 타

기타 궁금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 2148-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6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과 조문체계 및 용어정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제2항〕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 민간전문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개정
- 다. 그 밖에 관련 법제명,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263, 팩스 02-2148-5871

다. 전자우편 : 2011110714@mail.jongno.go.kr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과 조문체계 및 용어정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제2항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 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 민간전문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개정

다. 그 밖에 관련 법제명,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3) 「양성평등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주사” 를 “담당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금융기관” 을 각각 “은행” 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연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를 “위촉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재무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을 “재무업무 담당과장”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종로구의회 의장이” 을 “종로구의회가”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구금고 소관지점장” 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 를 “담당과장이” 으로 “업무담당 직원” 을
“업무 담당팀장” 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관할지역내에서” 를 “관할지역 내에서”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하며, “의한 소기업업” 을 “따른 소기업”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 을 “은행”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융자금의 사용등)” 을 “(융자금의 사용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를 “중소기업자에게”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u>경리관</u>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금융기관</u>(이하 “<u>금융기관</u>”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u>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연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u>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u>재무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u>	제1조(목적)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u>」 제62조의17- ----- ----- -----. 제2조(기금의 설치) ① <u>현행</u> ② -----<u>2022년 12월 31일</u>-----.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u>현행</u> ②-----<u>담당팀장</u>-----. ③「<u>지방회계법</u>」----- <u>재무관</u>----- -----. ④-----<u>다른</u> <u>은행</u>(---“은행”---)-----. ⑤ <u>현행</u>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u>현행</u> ② <u>현행</u> ③-----<u>위촉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u>재무업무 담당과장</u> 2. ----- <u>종로구의회가</u> -----

현행	개정안
2. 서울특별시 <u>종로구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u>구금고 소관지점장</u> 4. 중소기업의 대표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u>담당</u> <u>주사가</u> 서기는 <u>업무담당 직원</u>이 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u>의해</u>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자는 구 <u>관할지역내에서</u>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업 및 소상공인 4. 기타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생략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u>금융기관</u>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u>중소기업자에</u> <u>대하여</u> 용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 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3.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u> <u>갖춘 민간전문가</u> 4. <u>삭제</u> ④----- -----<u>담당</u> <u>과장이</u> ---- <u>업무 담당팀장</u> -----.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현행</u>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u>따라</u>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u>현행</u>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 <u>관할지역</u> <u>내에서</u>----- ----- -----. 1. <u>현행</u> 2. <u>현행</u> 3.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u>따른 소기업</u>----- 4. <u>그밖에</u>----- ----- ② <u>현행</u>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u>은행</u>----- ----- -----. 제9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 -----<u>중소기업자에게</u>----- ----- ----- -----. ② <u>현행</u>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조문체계 및 용어정리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263, 팩스 02-2148-5871

다. 전자우편 : 2011110714@mail.jongno.go.kr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조문체계 및 용어정리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
-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2항의 “금융기관에”를
“은행은”으로 한다. 또한 제3항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를 “정부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제6조제1항제3호”를 “조례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
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u>금융기관</u>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한다. ②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u>금융기관</u>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u>금융기관</u>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u>금융기관</u>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u>금융기관</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u>금융기관</u>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u>정부 또는 서울특별시</u>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생략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 ----- - - - - - <u>은행</u> ----- ----- -----. ② ----- <u>은행은</u> ----- -----. ③ <u>은행</u>----- ----- -----.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 ----- --- <u>은행</u> -----. ② ----- <u>은행</u> -----. ③----- ----- ----- <u>은행</u> ----- -----.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u>현행</u> 1. <u>현행</u> 2. ----- <u>정부 또는</u> -----. 3. <u>현행</u>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 -----<u>은</u>

현행	개정안
에는 지체 없이 <u>금융기관</u>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u>금융기관</u>의 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u>금융기관</u>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행----- --- 은행----- -----. ②은행----- ----- -----. 제10조(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 제6조제3호----- ----- -----. 1. 현행 2. 현행 3.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 2017. 12. 31. → 2022. 12. 31.
- 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안 제5조 제3항)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규정 두 차례 제한(안 제5조제4항)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2곳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종로구청 문화과 (담당 임호산)
- 연 락 처: 전화 02-2148-1806, 팩스 02-2148-5818
- 전자우편: 5678@mail.jongno.go.kr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3호
-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 2017. 12. 31. → 2022. 12. 31.
- 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 (안 제5조 제3항)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규정 두 차례 제한(안 제5조제4항)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2곳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라. 입법예고: 2017. 9. 8. ~ 2017.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회에 대해서는”을 “위원회에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
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위탁사무에 관하여”를 “위탁사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u> -----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u>2022년</u> ----- -----.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u> 의 출연금	2. <u>구</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생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u>금융기관</u>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 <u>은행</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u>위촉</u> 한다.	③ ----- ----- ----- ----- <u>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 개최 등)③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과 문화지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대여)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 및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위하여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부칙(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④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

제7조(심의회 개최 등)③ -----
----- 위원에게는 -----

-----.

제8조(회계공무원)① (현행과 같음)

② -----
----- 팀장 으로 -----.

③ 「지방회계법」----- 재무관-----

-----.

제9조(기금의 대여)① ----- 은행-----

-----.

② -----
----- 은행간-----
-- 은행-----.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 전화: 02-2148-2524, FAX: 02-2148-5822, 담당: 정선미, E-mail: espoir022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개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를 “지원금은”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으로 하고, “채적립하되”를 “채적립하고”로 한다.

제5조제2호 “이사회회의록”을 “이사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 ----- ----- ----- 지원금은 ----- -----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② <u>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 -----</u> -----재적립하고, ----- -----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1. (생 략) 2. <u>이사회회의록</u>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1. (현행과 동일) 2. <u>이사회 회의록</u>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 ----- 따른 ----- ----- ----- -----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17.12.31.자로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3)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 전화: 02-2148-2524, FAX: 02-2148-5822, 담당: 정선미, E-mail: espoir022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17.12.31.자로 만료 예정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반영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명(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제외)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3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하고, 제5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제2항 중 “간사로”를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하고, 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출납폐쇄”를 “출납 폐쇄”로 하고 “작성해야”를 “작성 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2조에 따라 -----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4급 이상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3명(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제외)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4. 노인복지 관계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

구 보

④ (생략)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은 위원회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
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 4.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명(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제외)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현행과 동일)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

-----해당 위원

1 ~ 4. (현행과 동일)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동일)

② _____

으로, 기금출납원은 간사로 한다.

-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③ 「지방회계법」--재무관-----

-.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 관계
공무원-----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 출
납 폐쇄 -----
-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

-----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
----- 위원에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사항 및 위반사항, 근거없는 규제 삭제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반영(안 제1조, 제 2조)
- 나.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교통행정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3275, 팩스 02-2148-5836

다. 전자우편 : dslee619@mail.jongno.go.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제2별관 교통행정과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사항 및 위반사항, 근거없는 규제 삭제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반영(안 제1조, 제 2조)
 나.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 1”를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2”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 및 제15조”를 “「도로법」 제14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조 중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공사시행자”로 한다.

제5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공사시행자”로 한다.

제8조제4항제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을 “관계 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2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제2조(정의)-----뜻은----- ----- 1.----- 「도로법」 제14조 및 제18조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u>공사시행자</u> 는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 ----- <u>경우에는</u> ----- ---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지정) <u>공사시행자</u> ----- -----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④ (생략) 1. <u>관계공무원</u>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1. <u>관계 공무원</u>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	제9조(업무의 협조) -----

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

제10조(수당) -----
-- 관계 전문가에게 -----

제11조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 <삭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장난감도서관 사용료 등을 구수입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 사용료 등 세부기준 (안 제18조1항, 안 제18조3항, 별표 1)

나. 상위법규와 저촉되는 조항 개정

- 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등

다. 상위법규와 반복되는 조항 개정 및 삭제

- 안 제25조제1항 등

라. 권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구체성을 띄어 명확히 하였음

○ 안 제25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3항 등

마. 규칙과 관계없는 법령의 조항을 준용한 조항 개정

○ 안 제30조의2제2항 등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언어순화

○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여성가족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308, 팩스 02-2148-5824

다. 전자우편 : 2015060253@mail.jongno.go.kr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이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 사용료 등 세부기준 (안 제18조1항, 안 제18조3항, 별표 1)

나. 상위법규와 저촉되는 조항 개정

- 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등

다. 상위법규와 반복되는 조항 개정 및 삭제

- 안 제25조제1항 등

라. 권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구체성을 띄어 명확히 하였음

- 안 제25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3항 등

마. 규칙과 관계없는 법령의 조항을 준용한 조항

- 안 제30조의2제2항 등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 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서울 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지급 받아 운영하는”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보육담당과장”을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에 위원장”을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신설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안전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때” 를 “경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 를 “경우” 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를 “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제4항 중 “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를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하며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육아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 대하여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 을 “에 대하여 별표1의 범위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한다)”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사용료 등” 를 ” 사용료를” 로 한다.

제24조제9항 중 “법 시행령 제25조의 4, 5를 준용한다.” 을 “영 제25조의5, 제25조의6을 따른다.”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다음” 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6호를 삭제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제2항 “법 시행령 제25조의6,7을 준용한다” 을 “영 제25조의 7,8을 따른다” 로 한다.

제31조제1항 “법 시행령” 을 “영” 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보조금의반환)” 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제18조제1항관련)

구 분			비 고
장난감 도서관	사용료(1년)	10,000원	- 회원카드 분실 시 2,000원 부과 - 파손시 동일 장난감 및 도서로 대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변상
	연체료 (장난감, 도서)	1일1점 200원	
대관료	교육실 (1회1시간)	15,000원	-1시간초과 30분마다 25%가산
프로그램 수강료	교육, 강좌	월50,000원 이하	-교재비, 재료비 별도
	전문 강좌	1회당 20,000원 이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 5. (생략) 6. 육아종합지원센터는 <u>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지급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u>	제2조(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
제5조(구성) ① ~ ③(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보육담당과장</u> 이 된다.	제5조(구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보육업무 담당과장-----.
제6조(기능) 1. ~ 2. (생략) 3. <u>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u> 4. ~ 5. (생략) 6. <u>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신설〉	제6조(기능)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전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생략)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구성)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해임 및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4. <삭 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현행과 같음)
- ②

----- 경우
-----.

제10조(회의)

- ① -----
-----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구성)

- ① -----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며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

제14조의2(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개정
에 관한 사항

2. 육아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 ~ 6. (생략)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횟수·시기,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4, 5를 준용한다.

⑩ (생략)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①-----에 대하여 별표1의 범위에 따라 사용료, 대관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
사용료를-----.

1.~ 6.(현행대로)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25조의5, 제25조의6을 따른다.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u>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u>	4. <삭 제>
5. <u>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u>	5. <삭 제>
6. <u>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u>	6. <삭 제>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 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삭 제>
② <u>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제27조(구성)	제27조 <삭 제>
① <u>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①<삭 제>
제28조(기능)	제28조 <삭 제>
1. <u>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u>	1.<삭 제>
2. <u>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u>	2. <삭 제>
3. <u>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u>	3. <삭 제>
4. <u>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u>	4. <삭 제>

5. <u>그 밖에 시설 운영에 대한 제 안 및 건의사항</u>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 표사항 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7을 준용한다. 제31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 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3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 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 다.	5. <삭 제>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영 제25조 의 7,8을 따른다. 제31조 ① -----영 ----- ----- ----- -----. 제 32조(비 용 및 보 조 금 의 반 환 명 령)----- ----- -----.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 <삭 제>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7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 나.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 수립 관련 조항 개정
(안 제6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내지제3항, 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신청사건립추진반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4294, 팩스 02-2148-5897

다. 전자우편 : cmhan@mail.jongno.go.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 나.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 수립 관련 조항 개정
(안 제6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내지제3항, 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7. 9. 8. ~ 9. 28. (20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매각수입중 구”을 “매각수입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과”를 “1명과”으로, “1인을”을 “1명을”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호로 한다”를 “회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으로 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인을”을 “1명을”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하며” 를 “총괄하며” 로,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6월과 12월 연 2회” 를 “연 2회”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을 “제1항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에서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에서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구의회” 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로 한다.

제13조 중에서 “관계전문가에” 를 “관계 전문가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 따라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
제3조(기금의 조성)	
1. ~ 4. (생략)	1. ~ 4.(현행과 같음)
5.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구 귀속분의 100 퍼센트	5. ----- 매각수입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구”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1명을 ----- 15명 ----- -----.
③ 위원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③ ----- ----- 위원 중에서 서 ----- 호의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u>사람</u>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 된다. 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 3. (생략) 4. 그 밖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u>부의하는</u>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하며</u>,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u>6월과 12월 연 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1. ~ 3.(현행과 같음) 4. ----- ----- 사람 ④ ----- -- 1명을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 3.(현행과 같음) 4. -----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하며, ----- ---. ② ----- 경우에는 ----- ---.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2회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기금출납원은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관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

② 제1항의 -----

-----.

③ 「지방회계법」 -----

-----.

① -----
-----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
-----.

② -----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

제13조(수당 및 여비) -----
----- 관계 전문가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78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1)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2)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여성가족과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2335, 팩스 02-2148-5824

다. 전자우편 : 0917ljn@mail.jongno.go.kr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마.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9 .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1)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2)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3)

다. 사전협의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 적합
-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적합

라. 기 타

-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신생아”를 “영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출산축하용품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대상 영아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유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또는 육아용품 교환권을 1회 지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제4항 중 “때”을 “경우”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동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때” 을 “경우”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출산축하용품 수령부(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산축하용품 수령부

(동)

- 126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신생아</u> 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u>자와</u>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 <u>영아</u> ----- ----- ----- -----.
<신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u>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대상 영아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u>
③·④ (생략)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① ~ ② (생략)	제4조(지원기준)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u>영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또는 육아용품 교환권을 1회 지원한다.</u>
제5조(지원신청 등)① ~ ⑤ (생략)	제5조(지원신청 등)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u>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같음한다.</u>
제6조(지원절차) ① ~ ③ (생략)	제6조(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하거나 보험가입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 ----- <u>경우</u> ----- ----- -----.

<신 설>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 ----- ----- 경우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2호 서식) 2.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출산축하용품 수령부(별지 제 7호 서식)
---	---